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조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하고,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를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 부부장검사·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방범부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부장검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촉직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의 위원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9호중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 제13조</u> 및 청소년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u>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청소년기본법 제11조</u> <u>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u>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중 당연직위원은 <u>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 부부장검사·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방범부장·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및 서울특별시복지건강국장·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u> 1.~4. (생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 부부장검사·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u> 1.~4. (현행과 같음)